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9
----------	-----

제출년월일 : 2000. 8. 1.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자치단체 차원의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권고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에서 제정 운영중인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를 포괄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내용을 포함한 자치법규로 활용하기 위해 보완 또는 보충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있는 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분야별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함 (안 제3조)
- 나. 자원봉사센터지원과 예산 및 결산 근거규정을 마련함 (안제8조내지 제9조)
- 다. 자원봉사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제10조)
- 라. 자원봉사대축제 기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범 시민적 참여속에 자원봉사가 활성화될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마.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하는 불의의 재난,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규정을 신설하여 자원봉사자가 안심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칠수 있도록 지원함(안 제14조)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중 “봉사센터설치운영”을 “봉사센터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한다.

제1조중 “설치 및 운영”을 “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으로 한다.

제2조내지 제4조를 제4조내지 제6조로 하고, 제2조·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 수급 및 배치업무와 봉사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 운영등을 위해 지역내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제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부패방지·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5조중 “다음 각호에”를 “다음 각호의 1에”로 하며 제7조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제8조· 제9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예산은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1월이내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제9조를 제11조· 제12조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 (자원봉사지원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과
시의 자원봉사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및 봉사활동 지원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자원봉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거나 자원봉사 관련 분야의 종사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중 조문의 제목 “보상”을 “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로, 동조 본문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호의 1과”로 하고, 동조제1호중 “제9조” 및 제2
호중 “제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제4호중 “각종 공연”을 “유료
공연”으로, “입장권 송부”를 “입장권 송부에 의한 입장료의 감면”으로
하여 제15조로 한다.

제11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3조·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자원봉사대축제 기간 운영) ①시장은 시민의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
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대축제기간을 설
정운영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대축제 기간 지정 및 그 행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14조 (보험가입) ① 자원봉사자의 활동중에 발생하는 재해, 사망등의 사
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할 경우 시장은 자원봉사활성화와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제10조 제2항의 규정은 현직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002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

③(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자가운전차량”을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으로 한다.

3.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소관 실·과·소		시 민 과 ☎940-4191
입 안 자	시 민 과 장	정 태 열
	사 회 진 흥 담 당	김 용 수
	담 당 자	김 윤 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u>설치운영조례</u> 제1조(목적)이 조례는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봉사센터”라 한다) <u>설치 및 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u>설치및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u> 제1조(목적) ----- 파주시종합자원봉사센터(이하“봉사센터”라 한다) <u>설치 및 자원봉사활동지원</u>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등을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4. “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등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5.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자원봉사활동의 원활한수급 및 배치업무와 봉사활동지원, 프로그램개발 운영등을 위해 지역내 설립한 사무소를 말한다.
(신설)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2. 사회복지 및 주민보건증진에 관한 봉사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4. 교육 및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활동 5. 범죄예방에 관한 봉사활동 6.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 7. 재해·재난관리 및 구조에 관한 봉사활동 8. 문화·예술·체육진흥에 관한 봉사활동 9. 인권옹호·부패방지·소비자보호에 관한 봉사활동 10.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1. 기타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주민복지증진에 필요한 봉사활동
제2조내지 제4조(생략)	제4조내지 제6조(현행 제2조내지 제4조와 같음)
제5조(직원) ① -----	제7조(직원) ① -----

현행	개정안
----- 다음 각호에 ----- ----- <u>제6조내지 제7조(삭제)</u>	----- 다음 각호의1에 ----- ----- <u>제8조내지 제9조 (신설)</u> <u>제8조 (센터의 지원) 시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u> <u>제9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8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u> <u>② 예산은 “파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집행하고 결산은 회계연도종료후 1월이내 시장에게 제출한다.</u> <u>제10조(자원봉사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지원과 시의 자원봉사정책에 관한 의견제시 및 봉사활동지원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자원봉사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u>② 위원회는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었거나 자원봉사 관련 분야의 종사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u> <u>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신설)	<u>제11조내지 제12조 (현행제8조·제9조와 같음)</u>
<u>제8조·제9조(생략)</u>	

현행	개정안
(신설)	제13조 (자원봉사대축제 기간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봉사활동 참여를 증진하 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 하여 자원봉사대축제 기간을 설정운영 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대축제 기간 지정 및 그 행 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보험가입) ① 자원봉사자의 활동중에 발생하는 재해, 사망등의 사 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 다. ②센터에서 자원봉사자 보험을 가입할 경우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성과 자원 봉사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상) ----- ----- 다음 각 호와 ----- ----- 1.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여 징수하는 자연발생 유원지 폐기물수거수수료의 감면. 2. (생략) 3.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 제3조제1항에의 하여 징수하는 입장료의 감면. 4. 파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에 초청장 및 입장권 송부 5. (생략)	제15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 ----- ----- 다음 각호의 1과----- ----- 1. ----- (삭제) ----- ----- 2. (현행과 같음) 3. ----- ----- (삭제)----- ----- 4. ----- 유료 공연과 ----- 송부에 의한 입장료의 감면. 5. (현행과 같음)
제11조 (생략)	제16조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부칙 <u>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부칙 ①(시행일)<u>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② (경과조치) <u>제10조제2항의 규정은 현직 위원장의 임기 만료일인 2002년 3월 20일부터 적용한다.</u> ②(다른조례의 개정) 1. 파주시자연발생 유원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8조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u> 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 2.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u>제3조제3항중 “자가운전차량”을 “자가운전차량 및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으로 한다.</u> 3. <u>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u> <u>제6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u> 7.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자.